



논단 |

기업결합의 경제분석과 ‘자가소비분’의 경제분석적 의미



김 석 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I. 기업결합의 경제분석

1. 기업결합사건의 특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거래질서 확보 및 독과점규제에 관한 기본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전문행정기관이다.

동 법률 제1조¹⁾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통한 공정하고 자유로

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 경쟁촉진, 소비자보호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가 공정거래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시장지배적지위, 거래, 경쟁, 소비자 등과 같은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시장(市場)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개념들로서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능하고 있는 업무의 중심장(中心場)이 바로 시장(market)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또는 경쟁제한행위 등을 감시하여 방지하고 시정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다시 시장의 구성 및 환경과 관련된 구조적(structural)인 것과 그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나는 활동의 결과인 행태적(behavioral)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측면의 불공정행위는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의 집중화 및 독과점화를 야기하여 시장지배력의 남용이나 공동행위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대표적인 예가 기업결합행위(M&A)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규제도 그러한 구조나 환경이 아예 조성되지 않도록 금지(원상회복)하거나 경쟁제한적인 내용이 심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해소 또는 완화하는데 주력한다. 반면 행태적인 측면의 불공정행위는 시장구조나 환경조성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러한 구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불공정하여 경쟁제한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

적인 예가 담합,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규제도 이미 발생한 행위를 시정시키거나, 법위반 및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와 함께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이 두 행위는 경쟁제한적 효과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타 불공정행위에 비해 훨씬 더 크고 강력하다는 점에서 세계 어느 경쟁당국 할 것 없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규제하고 있다. 이들 행위는 기업간의 자연스런 거래나 경쟁의 결과가 아닌,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공모(共謀) 등과 같은 인위적인 조치를 통해 독과점적 시장상황을 고의적으로 초래하거나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야기원인(위반행위의 단초 내지는 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가장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인 행위유형들이다.²⁾ 따라서 경쟁당국의 관심도 그만큼 높은 분야이다.

이 중 특히 기업결합행위는 단순히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흔히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공동행위와는 달리 단순히 기업결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반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기업결합행위에 있어 그 위법성 판단은 항상 시장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형태의 기업결합행위라고 하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이는 기업결합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분석(또는 경제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결

2) 물론 모든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것만은 아니며, 기업결합시 경쟁제한적인 효과보다 비용절감이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통해 경영효율성 효과가 더 큰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다.

3)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는 필자가 기고한 월간 공정경쟁 제79호(2002. 3월호), '국내 공정거래 심결사례와 경제분석의 역할' 중 관련부분(p.11~12)을 참조하기 바람.

합규제가 여타 위반행위 규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 결합규제는 이를 다룰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2. 경제분석적 기업결합심사의 중요성

기업결합 심사업무는 이러한 필요성 등에 따라 현재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업무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 미국, 독일 등 선진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기업결합 규제는 경쟁당국의 업무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성에 비추어 기업결합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규제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심사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평면적으로 시장점유율이나 집중지수(CR3) 측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입체적인 분석 및 심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심사당국의 분석(경제분석 또는 시장분석)수준 및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욱이 기업결합과 관

련한 경제분석 테마가 OECD 및 ICN⁵⁾ 등의 경쟁정책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주요 아젠다로 심도 깊게 토론⁶⁾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현재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국내신고 및 심사제도(기업결합의 역외적용)⁷⁾ 등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고서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기업결합심사 결과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 및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정을 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의 경우 경제국 산하 경제정책분석과에 전문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s)를 두고 이들 경제학자들이 합병, 소비자보호, 법령제정 등에 관한 계량적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결정시 경제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⁸⁾

반면 국내의 경우 그 동안 조직, 인력,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SNIP 테스트⁹⁾ 등 전문적 경제분석적 기법을 동원하여 시장을 획정한 사례(2002. 10. 파리

-
- 4) 기업결합규제는 사실상 사전적 규제로서, 행위가 발생된 후 시정조치 하는 사후적 규제에 비해 비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적인 환경조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5) 2001. 10월에 설립된 국제경쟁정책협의체(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로서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전세계 60여개 경쟁당국이 회원국이며 경쟁정책 분야, 특히 기업결합 분야의 글로벌스탠다드를 정립하는 역할을 수행.
 - 6) 토론주제 예시: '지배력' 기준과 '실질적 경쟁감소' 기준의 비교, 합병분석시 비경쟁적 요소의 고려, 시장획정시 SSNIP test 및 경쟁제한성 측정시 HHI 지수의 유용성 등.
 - 7)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여건 및 타당성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기업결합신고요령'을 개정하여 2003년 7월 1일부로 본격 시행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그것이 국내시장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받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므로,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가 계열사 포함 자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당사회사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토록 한정하고 있다. 시행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발생한 기업결합 중 총 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6건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해당기업에 통보하였고, 3건은 현재 심사중에 있다.
 - 8) 미국과 EU가 협의하게 된 GE/Honeywell 사건(2001)에서는 혼합결합의 포트폴리오(portfolio) 효과를 비롯한 세부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경제분석자료를 제시하여 각각의 논리를 뒷받침함.
 - 9)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의 약자로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 수요자의 반응을 조사하는 테스트로서 시장획정의 수단으로 사용됨.

크라상의 삼립식품 인수 건¹⁰⁾, 2002. 12. 무학소주의 대선 주식취득 건¹¹⁾), 전문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론 제시(2003. 8. 용산화학(주)의 KPTG(주) 주식취득 건¹²⁾), 경제분석 강화를 위한 Model 심사보고서 관련 연구용역¹³⁾의 벌주 등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수준 및 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괄목할 만한 효과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용산화학(주)의 KPTG(주) 주식취득 건의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적 기업결합 발생 등 사건내용의 복잡성과 다양한 쟁점,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간의 공방 등으로 인하여 약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심사기간이 소요되었고, 심사과정에서도 전문 이코노미스트를 동원한 경제분석적 접근과 이론 제시 등 최근에 있었던 기업결합사건 중 비교적 의미있는 내용이 많이 담긴 기업결합심사 건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결합심사의 모범적 전형으로 삼을 만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자가소비(自家消費)' 및 '수직결합의 효과'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부각되었는데 이에 대한 경쟁법적 의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기업결합제도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고에서는 이 중 '자가소비'의 논의내용 및 경쟁법적 의미 등을 관련규정 및 사례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분석적 접근'의 중요성을 짚어 보기로 한다.¹⁴⁾

II. 기업결합에 있어 자가소비분의 경제분석적 의의

1. 자가소비의 개념

자가소비(self supplies)가 무엇인지 뚜렷하고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보면,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서비스를 자체 생산하거나 조달하여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주로 수직연관시장(vertically-related markets)에서 문제되는 개념으로 다시 '내재공급(in-house supplies)을 통한 자가소비'와 '자기조달(do-it-yourself)을 통한 자가소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

10) 조사전문기관에 SSNIP 테스트를 설문 의뢰(용역)하여 조사한 결과, 양산빵(삼립식품)과 제과점빵(파리크라상)은 같은 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유율 변화 등 시장집중효과가 미미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건임.

11) 경남지역의 독점적 소주업체인 무학이 부산지역의 독점적 소주업체인 대선을 적대적 M&A한 사건으로서 기업결합 후 경남 및 부산지역 소주시장이 무학에 의해 독점화 될 우려가 있어 매입주식 전량을 처분토록 시정명령 한 건이다. 출하이동분석(LIFO, LOFI) 등 경제적 분석기법을 동원하여 '지리적 시장'을 확정하여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였다.

12) 도료 등의 화학원료인 MA(무수마레인산) 전문생산업체인 용산화학(주)이 MA를 원료로 1,4-BDO를 생산하는 후방기업인 KPTG(주)를 인수한 건으로서 수직결합에 따른 진입규제 등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겸임 제한, 협의회 설치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함.

13) 경제분석이 잘 된 미국의 주요 기업결합 사례들에 대한 분석기법 및 절차, 쟁점 등을 우리의 심사양식에 맞게 연구, 제출토록 민간전문분석회사인 LEOG코리아에 용역.

14) 다만 이 사건은 가장 경제분석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코노미스트들이 당시회사와 이해관계사를 통해 주관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는 제시된 이론이나 주장내용의 객관성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15) 한국개발연구원, 시장분석기법 및 경쟁지표(1999. 12) p.56-57 참조.

‘내재공급을 통한 자가소비’는 수직통합 된 자회사로부터 내부공급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다시 그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100% 공급받는 경우와 그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냉장고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냉장고 생산에 필수부품인 콤프레서를 자회사로부터 100% 또는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가조달을 통한 자가소비’는 공급연쇄의 한 단계에서 필요한 물품을 외부, 즉 하류기업(부품 또는 원료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다시 100% 자가조달 하는 경우와 일부는 자가조달하고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가 독립운송업자로부터 운송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자체 운송부문을 소유하는 경우¹⁶⁾라든가 석유화학업체가 화학제품의 기초원료가 되는 에틸렌을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BDO¹⁷⁾ 생산업체인 KPTG(주)가 1,4-BDO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MA¹⁸⁾를 상당 부분 직접 생산하여 조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자가소비의 기업결합적 효과

자가소비에 관한 논의의 초점은 해당시장의 점

유율 산정과 관련된다. 즉 시장획정 후 자가소비 분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해당시장의 점유율 산정에 포함하느냐 여부에 따라 기업 결합의 유형, 해당시장의 규모는 물론 시장집중도도 달라질 수 있고 결국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앞서 예로 든 MA 전문생산업체인 용산화학(주)이 1,4-BDO 생산 업체로서 그 원료인 MA를 소비하고 있는 KPTG(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는 수직적 연관 관계가 있는 수급업체간의 기업결합으로서 수직적 기업결합에 해당된다.

그러나 KPTG(주)가 MA 수요업체로서 용산화학(주)으로부터 MA를 공급받기도 하지만 MA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수직결합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즉 취득회사 및 피취득회사 모두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시 수평적 결합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해서 이 두 업체간의 기업결합을 반드시 수평결합으로 보고 심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KPTG(주)가 자체 조달하는 MA 생산량만 놓고 보면 국내생산량의 38.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공급량 기준으로 볼 때 46.1%인 1위 사업자에 해당되며, MA 전문생산업체이자 KPTG(주)에 공급업체인 용산화학(주)의 국내공급량(40.2%)보다도 오히려 많다.

여기서 소위 KPTG(주)의 ‘MA 자가소비분’

16) 물론 운송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자체 운송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수요에 반응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무시한다.

17) 아세틸렌과 포름알데히드를 반응시키거나 부타디엔, 폴리필렌, 무수마레인산(MA) 등을 원료로 생산되는 알코올로 폴리우레탄 등의 원료로 사용됨.

18) 무수마레인산, 벤젠이나 부탄을 산화시켜 생산하는 화학물질로 70% 이상이 1,4-BDO 제조에 사용되며 그 외에 수지, 도료, 가소제, 농약 등의 원료로 사용됨.

을 시장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KPTG(주)가 자체 생산하여 소비하는 MA를 MA시장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두 기업 간의 결합은 수급관계로 인해 수직결합이 됨은 물론 중첩되는 동일시장(MA시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평결합에도 해당된다. 또한, 두 업체의 MA 국내공급량이 약 90%에 육박하여 독점적 시장상황을 유발함으로써 CR3 시장집중도 기준만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

그러나 자가소비 하는 MA를 MA시장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두 기업간의 결합은 단순히 수급업체간의 기업결합으로서 수직결합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때는 수직결합으로 인한 시장봉쇄나 진입제한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별론으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자가소비 하는 MA를 MA시장에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기업결합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가소비분의 시장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하겠다.

3. 시장점유율 산정시 자가소비 포함 여부

가. 관련 규정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기업결합에 대한 국내외 규정 중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어

보인다. 다만 1984년 미국 법무성(DOJ)의 기업 결합 가이드라인(1984 Merger Guidelines) '2.23 자가소비 부분'에서 "관련제품을 자가소비 하는 수직통합기업의 경우 SSNIP 테스트에 대해 자가소비분을 시장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킨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1992년 개정된 수평결합가이드라인(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대신 '1.3 관련시장 참여사업자의 획정'¹⁹⁾ 부분에 "관련시장 참여사업자의 획정에는 우선 관련시장에서 현재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포함된다. 수직적으로 결합된 회사도 포함시키는 것이 기업결합 이전의 관련시장에서 그들의 경쟁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되는 한에서는 수직적으로 결합된 회사도 포함시킨다"²⁰⁾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자가소비하는 회사를 시장참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소 유동적으로(case by case)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데, 시장참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이 있기 전에 기업결합에 참여한 회사들이 관련시장에서 최소한 '경쟁상의 위치(competitive significance)'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다시 '경쟁상의 위치'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고 이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국 시장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 기업결합심사의 기초가 되는 시장획정은 먼저 수요측면 SSNIP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획정된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산정은 다시 공급측면 SSNIP 테스트를 통해 관련시장 참여자들을 확인한 후 시장참여자로 확인된 이들 회사들의 판매액 또는 생산능력을 근거로 한다.

20) The Agency's identification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relevant market begins with all firms that currently produce or sell in the relevant market. This includes vertically integrated firms to the extent that such inclusion accurately reflects their competitive significance in the relevant market prior to the merger.

동 가이드라인의 ‘1.32 공급반응을 통하여 참여하는 사업자’에서는 “현재 관련시장 제품을 관련 지리적 시장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지 않는 사업자라도 그들을 시장참여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예상 공급반응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될 경우에는 시장참여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유동적 진입자라 불린다. 이러한 공급반응은 “작지만 의미있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인상(SSNIP)”에 대응하여 1년 이내에 그리고 진입, 퇴출에 큰 매몰비용 지출 없이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그러한 유동적 공급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예컨대, 제품의 인지도 확보, 유통, 또는 생산에 있어서의 장애로 인하여 그러한 반응이 이윤을 증가시키지 않아) 공급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 사업자는 시장참여자로 보지 않는다”²¹⁾라고 되어 있고, 역시 동 가이드라인 ‘1.4 시장점유율의 계산’의 ‘1.41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의 생산 능력이 관련시장제품 외의 다른 제품 생산에 전

속되어 있거나 그 제품 생산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어서 관련시장에서의 가격인상에 대한 반응에 이용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판매량이나 생산능력은 시장점유율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²²⁾라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洲법무장관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Attorneys General)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5.15(2) 내부소비(Internal Consumption)’에는 “내부소비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수직통합기업은 이러한 내수공급분을 시장판매로 전환할 수도 있다. … 그러한 전환을 확인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수직통합된 기업이 시장에 제품 일부를 이미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와 내부소비용으로 제작된 물품을 시장판매용으로 전환한 과거전력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²³⁾라고 되어 있다.

독일의 기업결합 정보리플렛 Information leaflet relating to the German control of concentration(2000. 11)을 보면, “내부생산(in-firm production)은 시장점유율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나, 그것은 잠재적 경쟁의 한 형

21) The Agency will identify other firms not currently producing or selling the relevant product in the relevant area as participating in the relevant market if their inclusion would more accurately reflect probable supply responses. These firms are termed “uncommitted entrants.” These supply responses must be likely to occur within one year and without the expenditure of significant sunk costs of entry and exit, in response to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price increase. If a firm has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to achieve such an uncommitted supply response, but likely would not(e.g., because difficulties in achieving product acceptance, distribution, or production would render such a response unprofitable), that firm will not be considered to be a market participant.

22) In measuring a firm’s market share, the Agency will not include its sales or capacity to the extent that the firm’s capacity is committed or so profitably employed outside the relevant market that it would not be available to respond to an increase in price in the market.

23) A vertically integrated firm producing the product for internal consumption may divert this supply to the open market. Diversion is unlikely if there are no suitable and economical substitutes for the product and/or the firm has contractual or other obligations for the goods utilizing the relevant product. The most persuasive proof of such diversion will be evidence that a vertically integrated firm already sells some of the product on the open market and has a history of transferring production intended for internal consumption to the open market.

태로서, 특히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²⁴⁾라고 기술되어 있다.

영국 공정거래청(OFT)의 기업결합 가이드 Mergers, substantive assessment guidance (2003. 5)의 ‘3. 실질적 경쟁 감소(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중 3.21에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제품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내부수요(internal needs)용 생산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판매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수요용 생산품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판매용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가 고려대상이 된다”²⁵⁾라고 기술되어 있다.

ICN도 PROJECT ON MERGER GUIDELINES, Interim report for the second ICN annual conference in Merida(June 2003)의 IV. vertical integration, the temporal dimension, and other issues 중 1.50에서는 “수직통합 된 기업의 거래와 관련 상품으로 판매된 제품만 시장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내부소비용 제품도 포함되는지가 이슈가 된다. 이 문제와 관

련하여 호주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SSNIP에 반응하여 내부소비를 포기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공급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내부소비분을 시장에 포함할 수 있다. 가령 영국 (OFT)의 가이드라인도 그와 같이 제품이 스위치 되는 경우에는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²⁶⁾고 되어 있다.

나. 자가소비에 대한 판단기준

지금까지 자가소비와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규정이나 해석 또는 입장들을 살펴보았는데,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 산정시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첫째, 어떤 경우에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 포함하는가와 관련하여 최소한 해당제품의 가격 인상에 대하여 자가소비분을 시장판매분으로 전환하여 공급반응이 가능하고 또한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소비분을 시장에 포함시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려고

24) The in-firm production for buyers or other suppliers, who may then become potential competitors, is not to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s of market shar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share of production sold to third parties. As part of the overall assessment, in particular of entry barriers, in-firm production may be of substantial significance as a form of potential competition.

25) In some cases, a supplier may be using some of its capacity or production to meet its own internal needs. In the event of a rise in price on the open market, the supplier may decide to divert some or all of its 'captive' capacity or production to the open market if it is profitable to do so, taking into account effects on its downstream business that is now deprived of the captive supply. The extent to which 'captive' capacity or production is likely to be released onto the open market will be taken into account in assessing the competitive constraint.

26) Transactions involving vertically integrated firms raise the issue of whether production of a relevant product consumed internally by a market participant ("captive produ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duct market or whether only production sold to the "merchant market" should be included. The Guidelines that refer to this issue generally follow the principle that captive capacity or production will be included in the market only if it can be demonstrated that it would be profitable for the supplier to forego captive use and sell into the merchant market in response to a SSNIP of the product in the merchant market. For example, the U.K.(OFT) Guidelines note that "The OFT may take into account captive capacity or production where that capacity or production could be readily and profitably switched to the free market."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는 해당기업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또는 해석여하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case by case). 이는 결국 기업결합 심사당국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및 분석능력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나 이슈의 제기는 주로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 또는 시장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을 자가소비분을 판단하는 기준(모델)이라고 가정하고, 앞서 예로 든 용산화학(주)의 KPTG(주) 인수 전에 대입하여 보기로 한다. 이 건은 국내 최대 MA 전문생산업체인 용산화학(주)이 국내 최대 MA 수요업체인 KPTG(주)를 주식취득의 방법을 통해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이다. 그리고 용산화학(주)은 KPTG(주)에게 KPTG(주)가 수요로 하는 MA 중 외부 구매분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기업결합은 수직적으로 연관된 시장에서 수급업체간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업결합유형이다. 그런데 KPTG(주)는 1,4-BDO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MA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MA 생산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를 풀가동 하고도 필요한 MA 수요량을 충분히 커버(coverage)하지 못해 부족한 부분 만큼 용산화학(주)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용산화학(주)과 KPTG(주)

가 기업결합 하는 경우 KPTG(주)가 자체 생산하여 충당하는, 즉 자가소비 하는 MA를 MA 시장점유율 산정시 포함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1) MA 시장에서 MA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KPTG(주)가 자가소비분을 시장판매분으로 전환, 즉 공급반응이 가능한지 여부와 (2) 또한 그로 인해 과연 KPTG(주)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할 것이다.²⁷⁾

먼저 (1)과 관련하여 KPTG(주)의 공급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1) 시장에서 MA 가격인상에 대한 KPTG(주)의 반응도²⁸⁾, 2) MA의 생산능력, 3) 현재의 MA 생산량, 4) MA를 원료로 하는 1,4-BDO 제품의 향후 생산계획, 5) 1,4-BDO 관련설비의 향후 증설계획, 6) 1,4-BDO를 원료로 하는 후방시장(down-stream market) 제품에 대한 수요의 추이 및 산업동향, 그리고 7) 과거 유사전력(자가소비분의 시장판매경험) 등을 분석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와 관련하여서는 1) KPTG(주)가 MA를 시장판매분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 2) 1,4-BDO의 가격 및 판매이익, 3) 1,4-BDO를 포기했을 때의 금전적 손실비용(cost), 4) 앞의 1), 2), 3)간의 이익형량시 이해손실 관계, 5) KPTG(주)가 참여하고 있는 1,4-BDO 시장에 대한 현재의 지배력 및 MA 판매전환시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사례에서 KPTG(주)는 '97년 말 이후 수년

27) 이러한 분석들을 편의상 '공급반응분석'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8)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SSNIP 테스트가 필요하나, 관련 당사기업에 대해 SSNIP 테스트를 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과거 MA의 가격변동과 이에 대한 KPTG(주)의 대응결과를 통해 공급반응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안 MA의 10%이상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응하여 자가소비분을 시장판매용으로 전환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1,4-BDO - THF - PTMEG - SPANDEX로 수직연관 되어 있는 시장의 스트림(stream) 속에서 SPANDEX의 수요증가로 인한 1,4-BDO의 수요증가²⁹⁾로 자체 MA 생산시설을 풀가동 하여 MA를 충당하고도 부족하여 외부 조달하고 있어 시장판매 전환을 위한 여력이 없고, 또한 1,4-BDO가 MA 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³⁰⁾이어서 MA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자가소비분을 시장판매로 전환할 유인이나 전환에 따른 이익발생이 기대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용산화학(주)과 KPTG(주)가 기업결합을 통해 수직적으로 통합된 이후 용산화학(주)의 KPTG(주)에 대한 MA 공급분을 자가소비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용산화학(주)의 생산능력 및 MA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MA 시장에서 MA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생산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용산화학(주)의 공급분은 시장점유율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국내외 관련사례

(1) 국내사례

자가소비와 관련된 국내 심결사례를 보면, 시장점유율 산정시에 자가소비분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케이스마다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관련사례들을 시기별로 다시 정리해 보면, 대체로 2002년 이전까지는 자가소비와 관련하여 뚜렷한 입장이나 분석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즉 관련 심사보고서 등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 포함했을 경우 왜 포함했는지 또는 제외했을 경우에는 왜 제외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 소위 자가소비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분석적 접근(제품의 가격인상에 대한 자가소비 사업자의 공급반응분석)을 토대로 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서 먼저 자가소비를 포함한 경우를 보면, 한화석유화학(주)과 대림산업(주)간 사업부문 교환을 통한 상호영업양수 건(1999. 12)의 경우 에틸렌³¹⁾ 시장점유율 산정시 “에틸렌은 자사소비량이 많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매출액’ 대신 ‘자가소비를 포함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가격인상 시 자가소비분의 외부판매가능성’에 대한 분석 검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주)삼양사 및 SK케미칼(주)의 합작회사 설립참여 건(2000. 10)의 경우에도 폴리에스터 고합중진 레진 시장점유율 산정시 자가소비를 포함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기는 했으나 왜 자가소비분을 포함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가소비가 제외된 사례를 보면,

29) 실제 KPTG(주)는 용산화학(주)과의 기업결합 후 1,4-BDO 생산시설의 대폭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음.

30) 2000~2002년의 1,4-BDO의 가격은 MA 가격의 1.3~1.7배정도 됨. 2000년도 내수가격 기준 MA가 톤당 874천원인데 비하여 1,4-BDO는 톤당 1,543천원이며 매출원가 기준으로는 MA가 톤당 916천원인데 비하여 1,4-BDO는 톤당 1,336천원이었음.

31)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원료로서 원유를 납사로 크래킹(분해)하는 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을 말함.

(주)LG화학의 현대석유화학(주) PVC 사업 양수 건(2000. 11)의 경우 시장점유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및 판매량 산정시 자가소비를 제외한 자료를 제시한 후 참고적으로 자가소비를 포함한 판매량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 역시 자가소비를 제외한 이유와 그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공급반응분석’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처리된 사건에서는 자가소비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시장점유율 산정시에 자가소비를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그 이유와 함께 그것을 뒷받침할 분석적 근거(공급반응분석)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물론 현대·기아자동차(주)의 위아(주) 주식취득 건(2002. 6)의 경우와 같이 초기에는 개략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었지만, 이후 애경유화(주)의 KPTG 주식취득 건(2002. 12) 및 동양제철화학(주)의 고합(주) PA · DOP 영업양수 건(2003. 1)을 거쳐 최근의 용산화학(주)의 KPTG(주) 주식취득 건(2003. 8)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자가소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공급반응분석’ 등 경제분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위 사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

대·기아자동차(주)의 위아(주) 주식취득 건(2002. 6)의 경우³²⁾ 수동변속기 및 전·후륜용 차축 시장의 점유율 산정시 현대·기아차(주) 등 완성차 업체의 자가생산·소비분을 제외하고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였는데, ‘그 동안 자가생산분이 시장에 판매된 사례가 없고 경쟁사업자도 당연히 자가생산분은 제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완성차 업체도 자가생산분도 부족한 관계로 외부에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애경유화(주)의 KPTG(주) 주식취득 건(2002. 12)의 경우³³⁾에도 MA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서 제외하였는데, KPTG(주)의 주된 사업목적은 PTMEG³⁴⁾ 생산으로서 그 중간재인 MA를 생산하여 자가소비에 충당할 뿐이고 외부에 판매할 여력이 없어 최근 수년간은 자가생산분도 부족하여 매년 5,000여톤을 외부에서 추가로 구매하고 있고, PTMEG의 수요처인 스판덱스 시장이 위축되어 PTMEG 수요가 감소해도 KPTG(주)가 자가소비용 MA를 외부에 판매하면 이는 결국 자신의 PTMEG 판매 감소를 초래하므로 PTMEG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MA를 외부에 판매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스판덱스 시장은 성장세에 있으므로 PTMEG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할 요인은 크지 않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동양제철화학(주)의 고합(주) PA · DOP

32) 이 건의 경우 차축 등 일부품목에서 기존 계열부품사의 생산제품과 중첩되는 시장이 있어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완성차와 부품업체간 수직결합에 따른 시장봉쇄효과가 있는 등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시정조치 하였음.

33) 이 건은 용산화학(주)의 경쟁사인 애경유화의 KPTG(주) 주식(30%)취득에 대해 KPTG(주)의 자가소비분 포함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7.0%가 되어 경쟁제한성 문제가 발생함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KPTG(주)의 자가소비분을 제외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임.

34) 주원료인 THF 등에 촉매를 투입한 뒤 중합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 스판덱스, 폴리우레탄, 인조피혁 등의 원료로 사용됨.

영업양수 건(2003. 1)³⁵⁾의 경우에는 '일부 회사는 자체생산분도 부족하여 외부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자가소비를 제외한 국내 소비량이 국내 생산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어 가격인상시 자가소비용 제품이 외부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2) 외국사례

국내사례와 마찬가지로 시장점유율 산정시에 자가소비분을 포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케이스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가소비분을 포함한 사례를 보면, 미국 Alcoa건(1945. 3)의 경우 법원은 '아연괴를 생산하여 이를 후방생산공정에 투입하고 일부는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Alcoa사가 후방생산공정의 투입 조절을 통하여 아연괴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Alcoa사의 자가소비분을 아연괴 시장점유율에 포함시켰다. 이는 앞에서 자가소비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공급반응분석'에 따라 자가소비 사업자의 자가소비분의 시장판매 전환(직접적 공급) 가능성을 직접 본 것이라기보다는 역으로 후방산업제품의 수급조절을 통해 '아연괴 수요시장' 입장에서 자가소비가 결과적으로 미치는 간접적인 시장영향

력을 근거로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³⁶⁾

또한 세계 최대의 실내외 도어(door) 제조·판매회사인 캐나다 Premdor가 실내도어 재료인 무너목(doorskin) 제조사인 미국 Masonite를 인수한 건(2001. 8)의 경우 법원은 Premdor의 칠레 자회사인 Fibramold가 생산하는 무너목 전량을 자가소비 하는 Premdor를 '무너목 시장'의 참여자로 포함시켰다.³⁷⁾ 그 이유는 무너목 제조업체들의 Premdor사에 대한 납품가격 인상 등 담합시에 대비하여 Premdor사가 무너목 생산을 확대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Premdor사는 무너목의 저가 공급을 바탕으로 실내도어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실내도어 시장에서 계속해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현재 직접 자가소비 되는 무너목의 외부판매(시장판매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결합 후 Premdor사에 의한 무너목의 잠재적 공급확대 가능성'³⁸⁾ 및 그에 따른 후방시장(실내도어)에서의 경쟁제한 우려'에 중점을 두고 내린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공급반응분석'에 따라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에 포함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다.³⁹⁾

35) PA는 무수프탈산으로 가소제인 DOP, 도료, 폴리에스터 수지, 안료 등의 원료로 사용됨. 이 건의 경우 고합(주)의 이 사업부문이 부설하여 회생불가한 기업과의 기업결합으로 예외인정 됨.

36) Alcoa건은 Alcoa사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알루미늄 시장 독점에 대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주요 쟁점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결합의 문제는 아님.

37) 이 건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Premdor사의 도어스킨 관련 시설, 라이센스 등 자산일부를 처분하는 시정명령이 부과됨.

38) 칠레 자회사인 Fibramold 및 인수대상회사인 Masonite의 자세한 무너목 생산능력 및 판매상황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만약 Fibramold사의 생산여력(capacity)이 있거나 Masonite사의 Premdor 판매분 외에 외부(시장)판매분이 있다면 자가소비 되는 무너목을 시장판매로 전환하지 않고서도 추가적인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39)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한 회사의 자가소비가 아닌 계열사(자회사)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KPTG(주)의 자가소비와 동일한 개념의 자가소비라고 보기는 곤란함.

다음으로 자가소비분을 시장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한 사례를 보면,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미국의 Alco사가 동종업체인 미국의 Reynolds를 합병한 건(2000. 5, EU 경쟁위원회)⁴⁰⁾의 경우 알루미늄의 원재료로서 알루미늄 제조에 자가소비 되고 있는 SGA⁴¹⁾는 SGA 시장 점유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는 알루미늄이 SGA 가격의 약 8배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되므로 SGA의 외부판매(시장판매 전환)에 따른 이익이 완제품인 알루미늄의 판매상실에 따른 손실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자가소비분이 시장판매로 전환된 사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미국의 GE와 동사 및 동사의 경쟁사업자에게 엔진시동기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의 Honeywell간의 합병 건(2001. 7, EU 경쟁위원회)⁴²⁾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 후 엔진시장 및 엔진시동기 시장에서 시장 봉쇄나 시장지배력이 남용되는 경우에도 엔진 생산을 위해 엔진시동기를 자가소비하고 있는 P&W사가 합병기업을 제한하기 위해 엔진시동기 자가소비분을 시장으로 판매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엔진에 비해 엔진시동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시장에 판매할 경우 엔진의 판매상실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의 두 EU 경쟁위원회 심결사례는 앞에서 제시한 ‘공급반응분석’에 따라 자가소비분을 평가

하고 시장점유율에서 제외한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론

지금까지 자가소비 관련규정 및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의 구성이나 성격 등 경쟁법의 환경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미국과 EU의 접근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자가소비가 시장점유율의 산정 또는 시장참여자의 확정과 경쟁제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심사시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원인과 판단을 구하는 입장이므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나 관련사례를 보면, ‘자가소비 그 자체’보다는 자가소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적인 상황(즉, 경쟁상황)을 중심으로 자가소비 문제에 역으로 접근하려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EU는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지배에 중심을 두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경향이므로, 관련사례 및 해석 등을 보면 ‘자가소비 그 자체의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 후 경쟁제한성과 관련된 결론에 도달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가소비의 내용, 시장판매로의 전환가능성, 그러한 경우 그것이 시장

40) EU 경쟁당국은 이 사건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1) Smelter Grade Alumina의 약자로 건조과정을 거친 알루미나(CGA)를 다시 calcination 처리한 것.

42) 이 건은 합병당사기업이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제되는 생산시설의 매각을 undertaking함으로써 해결되었다. 특히 이 건과 관련 EU 경쟁당국이 portfolio 효과를 근거로 경쟁제한성을 있음을 지적한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소비자 효율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근거로 기업결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두 경쟁당국간의 경제분석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에 미치는 경쟁법적 효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 그 동안 자가소비에 대한 입장은 보면, 미국 및 EU 방식이 혼재되어⁴³⁾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EU쪽에 좀 더 가까웠던 게 아니라고 생각된다. 어떻든 자가소비는 기업결합, 특히 수직통합 된 기업과의 결합과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일 경우 시장점유율에 포함하거나 잠재적 경쟁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III. 향후과제

지금까지 자가소비의 경제분석적 의미와 함께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결합 심사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EU, 독일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며 경쟁당국이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우선순위에 따라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당장은 기업결합심사시 경제분석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현시점에서 바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경제분석을 자문할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결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업종별로 학자, 연구원,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심사인력과의 회의나 접촉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업결합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본고의 내용은 순전히 필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혀 둔다.

43) 가령 시장참여자의 확정에는 SSNIP 테스트방식의 미국식 접근을 원용하고, 자가소비분의 시장판매로의 전환 가능성(생산여력, 전환에 따른 이익 및 손실 등의 교량 등) 판단시에는 EU의 접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